

# 2017학년도 결산 및 인수·인계감사 보고서

감사기간: 2018. 3. 21. ~ 4. 6.

2018. 5. 23



학교법인 **조선대학교**

# 2017학년도 결산 및 인수·인계 감사 결과보고서

(2018. 5. 23.)

기관명: 조선대학교

감사자: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선 호 전



연번	지 적 사 항	조치 의견
1	<p><b>수입원과 지출원의 임면 및 인수인계 부적정</b></p> <p>○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」 제26조(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)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고, 각각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고,</p> <p>제41조(감사)에 따라 법인의 이사장은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·지출·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,</p>	<p>○ 통보</p> <p>-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람</p>

연번	지 적 사 항	조치 의견
2	<p data-bbox="268 331 922 365"><b>학교시설 사용허가 시 관리수당 운영 제도 개선</b></p> <p data-bbox="268 421 1197 622">○ 일반적 학교시설 사용허가(운동장, 강당 사용 등)의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집행하고 있으나, 외부 시험 등 용도로 학교시설 사용허가 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외 교직원들의 인적 용역 대가 명목으로 감독수당, 관리수당 등을 개별 지급 받는 사례가 있음</p> <p data-bbox="268 678 1197 835">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장 또는 교직원이 실제 출근하지 않거나 구체적 인 업무수행 없이 관리수당을 관행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를 권고함</p> <p data-bbox="268 891 1197 1003">* '관리수당'이란 각종 외부시험을 위한 학교시설 사용 허가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시험장 설치·지원 등의 명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시험주관사로부터 직접 받는 대가를 의미</p>	

연번	지 적 사 항	조치 의견
----	---------	-------

3 교수자율연구제 및 교원 연구년제 예산 절감(안) 마련

○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수 자율연구제와 연구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교원연구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

[교수자율연구제와 교원 연구년제 비교표]

구 분	교수자율연구제	교원연구년제
사업목적	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 의욕고취	교원의 학문발전과 연구 활성화 장려
선발인원	학기당 10명 이내	년 33명 내외 (정년계열 전임교원의 5% 이내)
신청자격	- 20년 이상의 정교수 (게시일기준) - 교원 연구년제 수혜 후 5년 경과자	- 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4년 이상지(신청일기준) - 재신청 6년 이상 경과자 (지원구분에 따라 상이함)
기간	12개월 이내	- 단기(2개월), - 장기(6개월 또는 1년내, 6개월 한도내 연장가능)
신청가능횟수	재직기간 통산 1회	- 교비지원 장기 2년, 단기 3회 (국내 2회 한정) - 자비 또는 의부지원 횟수 제한 없음
급여	정규 월급여액(전액 지급)	전액 지급 (보직자 기관판공비, 관리업무수당, 교통비 제외)
연구지원금	-	월 \$1,000 x 신청기간 + 왕복항공료 (최대 \$12,000 + 왕복항공료)

연번	지 적 사 항			조치 의견
구 분	교수자율연구제	교원연구년제		
결과보고의무	교수자율연구제 종료 후 1년 이내 본교 부설연구기관 우수학술지 이상의 논문 1편 게재	- 연구년제 종료 후 2년 이내(국제지 3년 이내) -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 이상의 논문 1편 게재		
복무의무	교수자율연구제 종료 후 2년 이상 복무	연구년제 종료 후 3년 이상 복무 (2개월 수혜자 1년 이상 복무 규정 개정중)		
결과보고 미이행 시 제재조치	이행 시 까지 매 학기당 강의책임시간 + 3시간 추가강의	이행 시 까지 교내학술연구비, 학술활동지원금 연구년제 신청제한		
주관부서	인사혁신처 교원인사팀	연구처 연구진흥팀		
근거 규정	교원인사규정	교원 연구년제 규정		
<p>[타 대학교 연구년제 운영현황] ※ 2017. 12. 4일자</p>				
대학교	연구지원금 지급여부	연구기간	복무의무 기간	복무의무 미이행시 제재사항
영남대학교	X	6개월~1년	연구기간의 2배수	없음
동아대학교	X	6개월~1년	1년~3년	연구년 기간 중 급여 전액 반환
원광대학교	X	6개월~1년	1년~2년	연구년 기간 중 급여 전액 반환
전남대학교	○	1년 이하	연구기간의 2배수	연구지원금 반환
조선대학교	○	2개월 6개월 1년	3년	없음

연번	지 적 사 항	조치 의견									
4	<p><b>어학연수 지도교수제 검토</b></p> <p>○ 현지에서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들의 수강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지도교수를 아래와 같은 처우로 파견하고 있으나,</p>										
5	<p><b>국고보조금 사업의 정산 및 감사보고서 관리</b></p> <p>○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국고보조를 받는 사업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'e나라도움 시스템'을 통해 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보공시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, 정보공시 내용에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감사 의견을 반영한 외부 회계감사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55 1288 1212 1702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255 1288 359 1344">구 분</th> <th data-bbox="359 1288 734 1344">정산보고서</th> <th data-bbox="734 1288 1212 1344">회계감사보고서 제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255 1344 359 1433">대 상</td> <td data-bbox="359 1344 734 1433">기본사업 공동사업 공동연구 등</td> <td data-bbox="734 1344 1212 1433">국고보조금 총액 10억 이상인 보조사업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255 1433 359 1702">내 용</td> <td data-bbox="359 1433 734 1702">단위 사업별로 별도의 정산보고서 제출</td> <td data-bbox="734 1433 1212 1702">           방법1            개별적 정산보고서 작성 보고             방법2            1) 회계감사보고서에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 포함            2) 주석 양식 포함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정산보고서	회계감사보고서 제출	대 상	기본사업 공동사업 공동연구 등	국고보조금 총액 10억 이상인 보조사업	내 용	단위 사업별로 별도의 정산보고서 제출	방법1 개별적 정산보고서 작성 보고  방법2 1) 회계감사보고서에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 포함 2) 주석 양식 포함	
구 분	정산보고서	회계감사보고서 제출									
대 상	기본사업 공동사업 공동연구 등	국고보조금 총액 10억 이상인 보조사업									
내 용	단위 사업별로 별도의 정산보고서 제출	방법1 개별적 정산보고서 작성 보고  방법2 1) 회계감사보고서에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 포함 2) 주석 양식 포함									

연번	지 적 사 항	조치 의견
	<p>- 아울러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2(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)제①항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「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」 제3조(적용범위)제③항에 따라 감사의견 및 주석사항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나, 법인 정기감사때 실시한 외부감사의 감사보고서 발행시기와 불일치함으로 개별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감사를 수행하기 바람</p>	
6	장미축제 시민바자회 운영에 관한 사항	